제 4 1 8 회 국 회 (정 기 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법 안 심 사 소 위 원 회
심 사 자 료

(의사일정 제9항 ~ 제14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목 차

9. ~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명시[이인선의원안(제3301호)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1

(2)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 포함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마련 등[이해식 · 전진숙 · 서지영 · 이인선[제3393호] · 김남희의원안 제7조의3] ·····5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 운영 근거 마련[서지영 · 이인선(제3393호)의원안 제7조의4 신설] ·····21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서지영의원안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 ·····29

□ 심사경과

구 분	제안일자	여가위 회부	전체회의 상정	법안소위 등 심사
이해식의원안 (의안번호 제1138호)	2024. 6. 28.	2024. 7. 1.	2024. 9. 4.	2024. 9. 9.
전진숙의원안 (의안번호 제2468호)	2024. 8. 1.	2024. 8. 2.	법안소위 직접회부	2024. 9. 9.
서지영의원안 (의안번호 제3276호)	2024. 8. 28.	2024. 8. 29.	법안소위 직접회부	2024. 9. 9.
이인선의원안 (의안번호 제3301호)	2024. 8. 28.	2024. 8. 29.	법안소위 직접회부	2024. 9. 9.
이인선의원안 (의안번호 제3393호)	2024. 8. 29.	2024. 8. 30.	법안소위 직접회부	2024. 9. 9.
김남희의원안 (의안번호 제3436호)	2024. 8. 30.	2024. 9. 2.	법안소위 직접회부	2024. 9. 9.

(1)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명시 [이인선의원안(제3301호)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개 정 안	검토의견 등
□ 주요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 부칙 - (시행일) 공포한 날	□ 검토의견 ○ 개정안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인터넷의 속성상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명시는 제7조의3[1]에서 삭제지원 주체에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할 경우 실질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명시는 현행 제4호[2]에서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와 병렬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현행법 제2조제3호에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제1항에서 "성폭력피해자"를 "피해자"로 약칭하고 있음. □ 정부 의견 ○ (여성가족부) 법 제7조의3에 따라 국가는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물등

개 정 안	검토의견 등
	의 '삭제'는 '삭제지원'으로 자구 수정 필요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일상회복 지원'으로 규정할 필요 ○ **(기획재정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상담, 심리치료 및 의료 지원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 지원이 필요하며,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하기 보다 '일상회복 지원'으로 문구 수정하는 것이 좋겠음.

---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 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문대비표 >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② (생 략) < 부 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 포함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마련 등

[이해식 · 전진숙 · 서지영 · 이인선(제3393호) · 김남희의원안 제7조의3]

개 정 안	검토의견 등
□ 주요내용 ○ (이해식·서지영의원안)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 ○ (전진숙의원안)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과 구상권 행사의 위탁 근거를 명시함. ○ (이인선·김남희의원안)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추가함.	□ 대체토론 ○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건수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삭제 권한을 통해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함(김선민 위원) □ 검토의견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현행법 제7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자 등은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삭제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촬영물등 관련 범죄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현재, 서울 및 경기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14개소[3]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지원, 초기 긴급 삭제지원[4],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개 정 안	검토의견 등
○ 부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주체인 국가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 **전진숙의원안**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주체인 **국가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삭제지원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지원** 등은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다수 부처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 포함** - **이인선·김남희의원**안은 **삭제지원 대상**에 촬영물등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포함**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현행법은 촬영물등에 대해서만 삭제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신상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김남희의원안은 「개인정보보호법」[5]에 따른 **개인정보를 인용**하고 있어, **살아 있는 사람의 신상정보**만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고, 신상정보 삭제지원은 제7조3제1항부터 제5항까지 모두 연관된 내용인데, 이인선의원안은 **제1항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상정보의 범위**는 **이인선의원안**과 같이 규정하고, **김남희의원안**과 같이 제7조제1항뿐만 아니라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항**에서도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 정 안	검토의견 등
	※ 참고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 촬영물등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1항은 삭제요청한 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상정보의 신속한 삭제지원을 위해서는 관련법〔참고자료 1 참조〕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마련 등 - 전진숙의원안은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 4월 개소한 날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1,185,459건의 삭제지원을 하였으나, 구상권 청구 사례는 전무함.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해야 하고, 성폭력 사건 피의자의 형 확정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6] 및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범죄경력자료 및 인적사항 요청 대상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를 추가하고, 범죄경력자료는 범죄경력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7]에서 요청하도록 구체적인 자료의 범위와 요청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봄.

개 정 안	검토의견 등
	□ 정부 의견 ○ **(여성가족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함. - 다만, 경찰청 의견과 같이 범죄경력자료 조회 및 회보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회범위를 정한 규정이 존재해야하므로, 전문위원 수정안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6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필요한 자료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겠음. ○ **(방송통신위원회)** ① 삭제지원 주체를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게 되면 타 기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정책의 근거 조항이 삭제됨. ② 삭제 지원 등 업무 위탁 규정을 두게 되면,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상충될 소지가 있음. ③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삭제지원 되어야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 **(경찰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상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률로 조회 범위를 정한 규정이 존재해야하고, 현재 해당 법률 규정이 부재하므로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으로 제한해야 함.

3) 2021년부터 세부사업인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에 내내역사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2024년도 예산은 양성평등기금의 세부사업인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됨.

4)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u>연계하여 삭제지원</u>을 하고 있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개인정보</u>"란 <u>살아 있는 개인</u>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참고 1	삭제지원 관련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참고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절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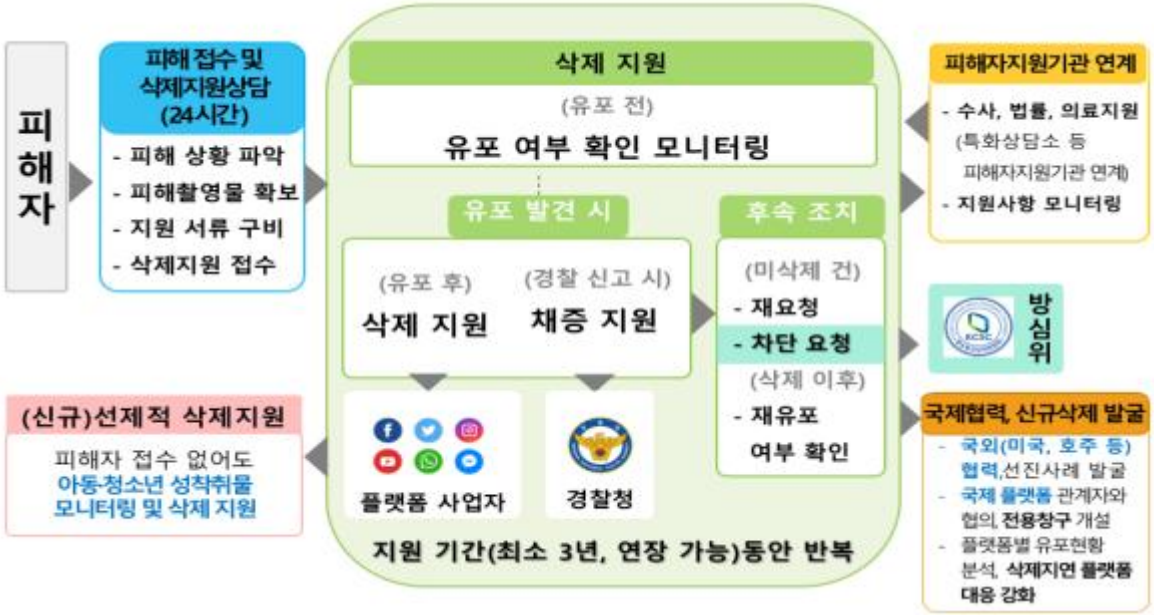

참고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실적(2018.4.30. ~ 2024.6.30.)**

(단위 : 건수)

연도	총 지원건수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 지원연계
2018년	33,921	4,787	28,879	203	52
2019년	101,378	5,735	95,083	500	60
2020년	170,697	11,452	158,760	445	40
2021년	188,083	17,456	169,820	708	99
2022년	234,560	19,259	213,602	1,525	174
2023년	275,520	28,082	245,416	1,819	203
2024. 6.	181,300	13,519	165,365	2,365	51
계	1,185,459	100,290	1,076,925	7,565	679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조문대비표 >

현 행	이해식의원안 서지영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이인선의원안	김남희의원안	수정의견
제7조의3(불법촬영 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	제7조의3(불법촬영 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의3(불법촬영 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3(불법촬영 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7조의3(불법촬영 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	제7조의3(불법촬영 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 행	이해식의원안 서지영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이인선의원안	김남희의원안	수정의견
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촬영물등과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 피해자"라 한다)--------. 이 경우 대화방,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말한다) 등에 게시된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삭제를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1. ~ 3. (현행과	1. ~ 3. (현행과	1. ~ 3. (현행과	1. ~ 3. (현행과

현 행	이해식의원안 서지영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이인선의원안	김남희의원안	수정의견
	같음)	같음)	같음)	같음)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 ------. ------- ---------- ---------- ---------- ---------- ---------- ----------.	② ----------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 ---------- ---------- ---------- ---------- ---------- ---------- ----------.	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 ---------- ---------- ---------- ---------- ---------- ----------.	② ---------- -------촬영물등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 ---------- ----------. ---- ---------- ---------- ---------- ---------- ---------- ----------.	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 ---------- -. ---------- ---------- ---------- ---------- ---------- --------.

현 행	이해식의원안 서지영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이인선의원안	김남희의원안	수정의견
				-----.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 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③ ----------촬영물등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 촬영물등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와----------.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 ----------촬영물등 및 촬영	1. ----------**촬영물등 및 신**

현 행	이해식의원안 서지영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이인선의원안	김남희의원안	수정의견
				물등 피해자 개인정보	**상정보**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 ----------청소년성착취물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	2. ----------**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④ ----------촬영물등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 삭제지원----------	④ ----------**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현 행	이해식의원안 서지영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이인선의원안	김남희의원안	수정의견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	----------.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⑤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⑤ ----------촬영물등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 삭제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후단은 전진숙의원안과 같음)**
<신 설>		⑥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 행	이해식의원안 서지영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이인선의원안	김남희의원안	수정의견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 ----------.
<신 설>		⑦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현 행	이해식의원안 서지영의원안	전진숙의원안	이인선의원안	김남희의원안	수정의견
		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⑥ ----------촬영물등 및 촬영물등 피해자 개인정보 삭제지원----------.	⑧ ----------**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서지영・이인선(제3393호)의원안 제7조의4 신설]

개 정 안	검토의견 등
□ 주요내용 ○ (서지영·이인선의원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 부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검토의견 ○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현재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제5항제7호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 서울 및 경기[8] 등 지역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를 직접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목적 및 업무에 신상정보 삭제지원을 명시하고, 이인선의원안과 같이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제7조의3과 관련한 피해 예방 및 지원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제7조의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국가는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이하 이조에서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 정 안	검토의견 등
	또한,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봄. □ 여성가족부 의견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함.

8)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9조(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 4 지역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현황[9]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9조 ○ 사업기간/운영방식 : 2022. 3. ~ / 공기관 위탁사업(서울여성가족재단) ○ 사업인력 및 예산 : 13명 / ('24년) 1,419백만원(시비 100%) ○ 주요 사업 : 피해자원스톱 지원,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 관련 근거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사업기간/운영방식 : 2021. 2. ~ / 공기관 위탁사업(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사업인력 및 예산 : 15명 / ('24년) 298백만원(사업비, 도비 100%) ○ 주요 사업 : 상담・삭제지원 등 피해자지원, 도민 대응감시단 운영, 예방 및 홍보 사업
□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피해대응센터 ○ 관련 근거 :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7조 ○ 사업기간/운영방식 : 2022. 9. ~ / 공기관 위탁사업(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 사업인력 및 예산 : 6명 / ('24년) 1,269백만원(국비 44백만원, 시비 1,225백만원) ○ 주요 사업 :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유포 모니터링, 자료작성 등 수사지원	□ 인천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 관련 근거 :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6조 ○ 사업기간/운영방식 : 2021. 6. ~ / 공기관 위탁사업(인천여성가족재단) ○ 사업인력 및 예산 : 6명 / ('24년) 587백만원(국비 44백만원, 시비 543백만원) ○ 주요 사업 : 상담・삭제지원 등 피해자지원, 인식개선 사업, 예방 서포터즈 운영

9) 자료: 여성가족부

< 조문대비표 >

현 행	서지영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수정의견
<신 설>	제7조의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국가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및 해당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제7조의4(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국가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및 해당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제7조의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국가는 **제7조의3항**에 따른 **촬영물등(이하 이 조에서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 행	서지영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수정의견
	1.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 3.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방지 관련 연구 및 홍보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 **및 삭제 지원** 2.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지** 관련 연구 및 홍보 3.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지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지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5.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 및 홍보 3.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현 행	서지영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수정의견
		지 관련 업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③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③ 시·도지사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1.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 삭제 지원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2. 제7조의3제2항의 삭제지원요청에 따른 삭제지원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3.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삭제지원	3.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3.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수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

현 행	서지영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수정의견
	사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지 관련 업무	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		
	④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현 행	서지영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수정의견
	< 부 칙 >	< 부 칙 >	< 부 칙 >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직으로 운영중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본다.

(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서지영의원안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

개 정 안

□ 주요내용

○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종사자의 보수교육, 피해자등의 의사존중, 운영실적 평가, 경비보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경찰관서의 협조, 비밀엄수 의무, 보고·검사,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추가함.

조항	규정 내용
제19조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결격사유, 자격기준(대통령령으로 위임)
제20조제1항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보수교육 실시
제24조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장과 종사자의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제25조제1항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제26조제1항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경비 보조
제27조제2항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요청 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지원
제30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 등의 비밀 엄수 의무
제31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의 경찰관서에 협조 요청 및 해당 경찰관서의 협조 의무
제32조제1항	여가부장관 등에게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보고 및 관계 공무원의 시설 운영 상황 조사 등
제33조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검토의견 등

□ 검토의견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수정의견**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

□ 여성가족부 의견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함.

개 정 안	검토의견 등
○ 부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조문대비표 >

현 행	서지영의원안	수정의견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②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서----------.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현 행	서지영의원안	수정의견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제7조의4, 제11조**----------.
제25조(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평가) ① ----------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제25조(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① ----------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현 행	서지영의원안	수정의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현 행	서지영의원안	수정의견
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통합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또는----------.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이----------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시설이----------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성폭력----------.